[서식 예] 권리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내 계약해지된 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권리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〇. 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20〇〇. 〇. 〇. 피고와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번지에 소재한 건물의 점포 330㎡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3년, 권리금 4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 받았습니다.
- 2.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건물을 소 외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며, 소외 ◉◉◉는 원 고에게 위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 점포를 소외 ◉◉

- ●에게 명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양** 250,000,000원만을 반환하고서, 위 권리금은 단 한푼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나다.
- 3.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위 건물을 소외 ◎ ◎에게 매도함으로써 중도에 해지되어 원고는 보장된 임대차계약기간 3년 중 1년간은 위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마땅하고, 그 반환하여야 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경과기간(2년)과 잔존기간(1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권리금 15,000,000원(45,000,000원 원×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점포를 명도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O O O O O (서명 또는 날인)

|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 ○○년(□☞소멸시효일람표,^^ |
|---------------|--|------|------------------|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
| 비 용 |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
|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
| 기타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임차인으로부터임대인에게 지급된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유효하게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양도 또는 전대차기회에 부수하여자신도일정기간 이용할수 있는권리를 다른 사람에게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일정기간이용케함으로써권리금상당액을 회수할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임대인의사정으로임대차계약이중도해지됨으로써당초보장된기간동안의이용이불가능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 있을때에는임대인은임차인에대하여그권리금의반환의무를진다고할 것이고,그경우임대인이반환의무를부담하는권리금의범위는,지급된권리금을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대용하는 것으로나누어,임대인은임차인으로부터수령한권리금중임대차계약이종료될때까지의기간에대용하는부분을공제한잔존기간에대용하는부만을반환할의무를부담한다(대법원 2002.7.26.선고 2002다25013판결). | |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